# 법무법인(유한) 강남 大 南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17(반포동 51-5 대동빌딩 6층) TEL:(02) 6494- 2303 FAX (02) 6494- 2300

2022년 7월 21일

수 신: ROALAND FOUNDATION LTD.

발 신: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상천, 진재용

제 목: ROA 백서에 관한 법률 검토

-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본 법무법인은 2022. 7. 7. 귀 사로부터 『법률 자문 요청(ROA 백서에 관한 법률 검토)』을 수신하여 법률검토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회신합니다.

첨부: 의견서 1부.

### 의 견 서

#### I. 배경 및 질의의 요지

Project ROALAND(이하 'ROALAND 프로젝트')는 NFT 거래와 NFT 관련 서비스를 위한 멀티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입니다. ROA (이하 'ROA')는 위 ROALAND 프로젝트에서 NFT를 구매하거나 거래하기 위해 사용하는 코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 NFT 등록 수수료 지급 수단: ROA는 NFT 등록을 위한 수수료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2) 게임 참여 및 유료 아이템 구매 등에 대한을 위한 지급·결제 수단: 사용자들은 게임 내 이벤트 참여, 특정 아이템의 구매 등에 대한 보 상으로 ROA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3) 광고 참여에 대한 수수료나 보상 지급 수단: ROA는 광고 게시 및 광고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보상이나 수수료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4) 호텔, 스마트밴딩머신, 인플루언서 후원 등 기타 서비스 연계 지급 등 수단: ROA는 호텔, 타운하우스, 리조트 바우처, 스마트밴딩머신 서비스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인플루언서를 후원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5) NFT 경매 또는 매매의 수수료나 보상 지급 수단: ROA는 NFT 경매나 매매시 수수료나 보상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사는 본 법무법인에 ROA가 한국 법령상 위반되는 점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Ⅱ. 검토 의견

#### 1. ROA가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ROALAND 프로젝트 백서(Project ROALAND White paper, 이하 '본 건 백서)<sup>1)</sup>의 내용에 의하면, ROA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u>'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u>단됩니다.

#### 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정의 및 종류

자본시장법의 규제대상은 금융투자상품입니다(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되고(자본시장법 제3조제2항), 본건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ROA가 자본시장법의 '증권'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만약 ROA가 '증권'에 해당된다면, 자본시장법에 의해 여러 규제를 받게 됩니다. 즉, 50인 이상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그리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또는 그 중개),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2항·제3항, 제11조), 또한, 증권의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는 자는 거래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373조).



<sup>1)</sup> https://jhsung.gitbook.io/project-roaland-white-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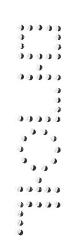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추가로 지급 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를 부담하지않는 것"이라고 하여,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하고 있는 한편,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는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제3조).

또한 이러한 정의와 더불어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의 유형을 1) 채 무증권, 2) 지분증권, 3) 투자계약증권, 4) 수익증권, 5) 증권예탁증권, 6) 파생결합증권으로 열거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이와 같이 열거된 유형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2)

이하에서는 ROA가 자본시장법 상 '증권'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위 분류의 각 증권유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 니다.

#### 나. ROA가 자본시장법 상 증권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 상 '증권'의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i)



<sup>2)</sup> 증권의 세부 유형에 부합하는지와 관계없이 자본시장법 제4조의 '증권' 자체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살펴 볼 수도 있으나, 이 경우 구체적 유형에 대한 고찰이 부족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 (ii)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이어야 한다는 점, (iii) 투자성 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ROA의 경우를 살피면 위 요건 중 (ii) 및 (iii)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 바, 자본시장법 상 '증권'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ii) 및 (iii) 요건의 구체적 의미는 투자성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투자자의 출자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재산적 가치를 득하게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계약상 권리라 할 것인데, ROA의 사용 용도를 보면 수수료및 결제 지급 수단, 특정 이벤트에 따른 보상 수단, 서비스(호텔, 스마트밴딩머신, 인플루언서 후원 등) 연계 지급 등 수단으로서 기능하고있을 뿐 ROA보유자에게 투자성 있는 권리가 인정되거나 어떠한 계약상 권리를 갖는 것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렵다고 보이는 바, 결국 ROA가 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 ROA가 자본시장법 상 증권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채무증권 해당성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 그런데, 블록체인의 특성상 암호화폐에 대한중앙집중화된 발행기관 혹은 지급·보증기관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OA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3자에게 지급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는 기능할 수 없으므로, 채무증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2) 지분증권 해당성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 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4항).

본건 백서의 내용을 보면, ROA에 의결권, 배당권을 등 지분권으로 볼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ROA는 지분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3) 투자계약증권 해당성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 따라서 코인 등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i)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ii) 타인이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ROALAND 프로젝트 및 이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을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공동사업에는 ROA 소지자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주로 '타인'이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ROA에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ROA는 1) NFT 등록 수수료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거나, 2) 게임 참여 및 유료 아이템 구매 등을 위한 지급·결제 수단, 3) 광고 참여에 대한 수수료나 보상 지급 수단, 4) 호텔, 스마트밴딩머신, 인플루언서 후원 등 기타 서비스 연계 지급 등 수단, 5) NFT 경매 또는 매매의 수수료나 보상 지급 수단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ROA의 용도를 살펴보면, ROA를 지급하고 일정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의 효용이 있으나, 이러한 지급·결제 기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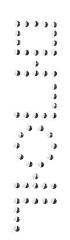


ROALAND 프로젝트나 일부 한정된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ROA에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ROA 소지자들에게 일부 이익이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는 ROALAND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이를 ROA에 내재된 구체적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가 발행한 코인에 대해 일정한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수익분배는 피고 회사가 코인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코인 보유자에게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이익일 뿐 코인에 내재된 구체적인 계약상 권리라거나 본질적 기능이라고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코인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9. 10.자 2019가단78506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가단225099 판결).3)

한편, 최근 소위 뮤직카우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22. 4. 20.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및 2022. 4. 29.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합쳐서 '가이드라인 등')을 각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등에서는 음원 저작료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확대하여 모든 코인이나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에 '증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서는 아니됩니다. 금융위원회도 위 가이드라인 등에서 어떤 상품의 증권성 판단은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위 가이드라인에서도 '증권

<sup>3)</sup>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9. 10.자 2019가단78506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거래소수수료의 일부를 H코인 보유자들에게 배당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일부 수익이 실제 H코인 보유자들에게 배당되기는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그러한 수익분배는 피고 회사가 H코인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H코인 보유자에게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이익일 뿐 H코인에 내재된 구체적인 계약상 권리라거나 본질적 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용자들이 이 사건 거래소를 H코인 거래를 한 것은 H코인 지체 거래로 발생하는 시세치익의 취득이 기장 큰 동기이고, 이에 관하여 H코인 보유자(투자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코인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



성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뮤직카우의 경우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이라는 '계약상의 권리'가 존재하고, 중앙집중의 운영주체가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의 경우 중앙집중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상정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이번 금융위원회의 발표를 근거로 일률적으로 블록체인상의 코인들이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위 가이드라인에서는 1) 소유권 등을 직접 분할하거나 2) 개별적으로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경우(예: 회원제 콘도 회원권)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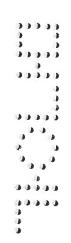
그런데, ROA의 경우 ROALAND 프로젝트의 기축통화로서 ROALAND 프로젝트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강합니다. 이러한 ROA의 성격은 위 가이드라인에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은 사례로 들고 있는 회원제 콘도 회원권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ROA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4)

#### (4) 수익증권 해당성

수익증권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5 항). 그런데, 이러한 수익증권은 '신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ROA와 관련하여서는 귀사나 다른 주체와 <u>어떠한 신탁관계</u>가 형성되어 발행되거나 관리된다고 볼 사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ROA는 수익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라. ROA가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sup>4)</sup> 다만, 향후 ROALAND 프로젝트에서 구현되는 서비스가 ROA의 '증권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 ROA의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금전 등을 지급·회수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기초자산이 있다고볼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ROA는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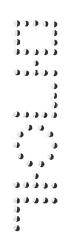
#### (5) 증권예탁증권에 해당성

증권예탁증권은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입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8항). ROA의 경우 관련 증권을 예탁하 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증권예탁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 법") 관련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자금세탁방지시스템(AML, Anti Money Laundering) 구축,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획득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만약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1항(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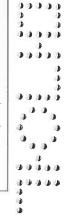
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보고 등), 제4조의2(금융회사 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8조).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20조).

따라서 귀사가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조의2(가상자산거래의 범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2021. 2.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서는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예로 1) 가상자산 거래업자, 2) 가상자산 보관리업자, 3)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매뉴얼에서는 단순히 가상자산의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만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이전·보관·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OA의 사용 용도 중 1) NFT 등록 수수료 지급, 3) 광고 참여에 대한 수수료나 보상 지급 수단, 4) 호텔, 스마트밴딩머신, 인플루언서 후원 등 기타 서비스 연계 지급 등 수단의 경우, 블록체인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ROA가 지급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귀사는 가상자산의 매매, 매수, 교환, 이전 등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게임 참여 및 유로 아이템 구매 등이나 4) NFT의 경매나 매매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중개, 알선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여, 귀사나운영주체가 가상자산 중개업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영업으로 거래 또는 이를 중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는 특정금융정보법령상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이렇게 '가상자산'의 정의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3호),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것,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등 기존 법률에의해 이미 규율되고 있어 자금세탁방지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적은



항목들을 '가상자산' 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구조로 가상자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5)

위 정의를 살펴보면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수는 대상은 매우 넓고, 경우에 따라서는 NFT도 가상자산으로 취급될 수도 있는 것처럼 판단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NFT는 수집, 지급·결제, 보상 등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여러 형태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보기보다는 제반 사정을 살펴 가상자산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도 2021년 10월 발표한 가상자산 및 가상사업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집품과 같이 활용되는 디지털자산이 NFT라 불린다'고 하면서, '이는 통상 FATF가 규정하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NFT가 결제나 투자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별로 따져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이 우리 금융위원회도 2021년 11월 23일 발



<sup>5)</sup>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sup>3. &</sup>quot;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홍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 폐

라. 「주식·사체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4조(가상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sup>1. 「</sup>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sup>2.</sup>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sup>3.</sup>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어 고시하는 것

<sup>6)</sup> http://www.fatf-gafi.org/media/fatf/documents/recommendations/Updated-Guidance-VA-VASP.pdf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Virtual Assets and Virtual

표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7)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면, 현재 <u>금융당국은</u> NFT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어떠한 <u>NFT를 가상자산으로 취급할</u>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ROALAND 프로젝트 내에서 NFT를 경매, 매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NFT 월렛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그 운영주체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ROALAND 프로젝트는 주로 게임 아이템이나 미술품에 대한 NFT를 발행하거나 이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21. 11. 23.자 보도자료를 통해NFT가 투자·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때, 가상자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높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게임아이템이나 미술품과 같이 그 주요 목적이 수집이나 감상 등에 있는 자산의 NFT의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NFT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가상자산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논의되고 있습니다.8) 따라서, 향후 금융당국이 NFT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잘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ROALAND 프로젝트의 NFT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ROA와 관련하여서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의 소지도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 3. 전자금융거래법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



Asset Service Providers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2021.10.28. 개정발표) 참

<sup>7)</sup> 금융위원회, 2021. 11. 23,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며, 다만 결제·투자 등의 수 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11.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보도 설명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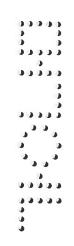
<sup>8)</sup> 이투데이, 2022.3.17, 가상자산 전문가들, "윤석열 정부, 디지털자산 전담기구 신설해야".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ROA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필요할 수 있고, '전자화폐'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발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전자금유거래법 제28조).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업무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5호).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i) 발행인(특수관계인을 포함)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지급하는 데 사용될 것, (ii)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 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 이하 같다) 이상일 것의 요건을갖춘 것을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은 제2조 제12호).

전자화폐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i)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 치단체 및 500개 이상 의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ii) 구입할 수 있는 재 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업종 이상일 것, (iii) 현금 또는 예금과 동 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iv)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 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전자금융 거래법은 제2조 제15호). 즉, 전자화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보다 더 범용성이 넓으 며, 환급성 및 환금성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한정된 영역에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범용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



단 및 전자화폐는 특정한 발행자를 산정한 개념이므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환경에서 하나로 특정할 수 있는 발행자가 없는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 관한 규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발행자가 없는 경우 선불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가 갖추어야 할 환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환금성또한 제한적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급심도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전자지급수단 중 하나인 전자화폐는 일정 이상의 지역에서 일정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수 있고 발행자에 의해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제2조 제14호 가목, 제15호 가 내지 마목), 피고가 중개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데 이용될 수 없고, 그 가치의 변동폭도 커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수 없으며 주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자금융거래법상 다른 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7가합585293 판결). 즉, 비트코인 조차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가 갖추어야 할 범용성,환급성 및 환금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ROA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ROA는 ROALAND 프로젝트 내에서 NFT 등록이나 광고 게시, 호텔, 스마트밴딩머신, 인플루언서 후원 등기타 서비스 사용료 지급, NFT 경매 참여 및 매매 등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화나 용역의 구매는 ROALAND 프로젝트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본건 백서를 살펴보면, ROALAND 프로젝트에서는 게임 아이템 및 미술품 NFT의 발행 및 이용에 사용되고, 호텔, 스마트밴딩머신, 인플루언서 후원 등에 한정되어 이용되는 것으로 보여, 실물 자산과 연결되어도 그 범용성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넓게 인정될지 의문



입니다. ROA의 용도가 이렇게 한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ROA가 바로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내포하고 있거나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은 '가맹점'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 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자금융거 제2조 제20호). 즉,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자화폐는 발행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의 거래에 관하여 일정한 계약을 맺고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 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ROALAND 프로젝트 운영 주체의 경우 제3 자와 대가 정산 등을 조건으로, ROA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사용 하도록 가맹점과 계약을 맺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ROA가 호텔, 스마트밴딩머신, 인플루언서 후원 등 기타 서비스 연계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더라도, 서비스 사용자로부터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이나 결제가 이루어지는 한, 귀사나 ROALAND 프로젝트 운영주체가 가맹점 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ROA는 2차 시장(secondary market)에서 거래되면서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에 불과한 것이고,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 자화폐에 관한 규율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대법원은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있지 않고, 가상 게좌번호와 비밀번호만을 제공하는 '캐시카드'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도2649 판결).9)



<sup>9)</sup>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도2649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먼저 캐시카드가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 는 용역(그 범위가 2개 업중 이상이어야 한다)을 구입히고 그 대기를 지급히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 한 정보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따라서 매체 자체에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해 보면, ROA는 T머니, 캐시비카드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는 다르게, 그 자체로 금전적 가치를 저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 자화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ROA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에서 요구하는 범용성, 환급성 및 환금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자금융법의 관련 규정 위반의 문제가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4. 게임산업진홍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존재 하는지 여부

게임산업법에 의하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1호).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게임산업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캐시카드는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있지 않고 가상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정보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에 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디고 할 수 없다. 그 메체를 통하여 알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 대가의 정산 또는 메개가 가능하다고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22조 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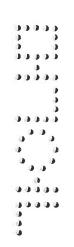
여기서 사행성게임물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등으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게임산업법 제2조 제1의2호).

한편,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게임물의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에는 NFT나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경우 위 '경품 등 제공 금지'나 '환전 등 행위 금지' 규정 등을 근거로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다양한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일부 가처분이 인용되어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10)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게임의 등급분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2019. 11. '게임위, '블록체인 기술이용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검토 진행'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이번 결정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에 대한 전면적 금지 선언은 아니며, 블록체인 기술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용될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등급분류가 이루어질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ROALAND 프로젝트에서 한국에 ROA를 이용하는 게임을 출시하는 경우, 이러한 게임산업법의 규제를 받아 등급분류 심사를 받아야 할 수



<sup>10)</sup> 뉴스원, 2021. 6. 24자 기사, "NFT 개임 '파이브스타즈', 게임위 상대 집행정지 가처분 승소"

도 있습니다. 본건 <u>백서에서는 이러한 등급분류를 회피하거나 잠탈하는</u> 취지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바, ROALAND 프로젝트의 게임은 한국의 규제를 준수하여 출시하거나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ROA는 게임 서비스 자체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향후 ROALAND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출시되는 게임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바, 게임 등급분류의 문제가 ROA 코인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ROA가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게임산업법 관련 법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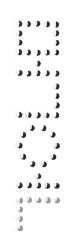
#### 5. 유사수신행위 관련하여 위반 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란 i)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ii)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규제 법 제2조).

암호화폐가 유사수신행위의 정의상의 '자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규제당국의 입장이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출자금(또는 원금)을 보장하는 약정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실제 출자금(또는 원금)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현행 법령상 관련 행위들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건 백서 상으로 ROA 발행시 구체적인 방법이 확인되지 않으나, 따로 원금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나 광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ROA가 유사행위규제법에 위반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를 (i)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ii) 위 (i)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 (iii)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방문판매법 제2조 제 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건 백서 상으로는 판매원으로 가입을 유도하는지 여부나 후원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ROA 관련 투자금 모 집과정에서 방문판매법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 상 천



진 재 용



